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br>번호 | 1646 |
|----------|------|

2017년 4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2월 10일 이윤희 의원의 17명
2. 회부일자 : 2017년 2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2월 23일 상정· 검토보고· 심사보류】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4월 21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윤희 의원)

### 1. 제안이유

-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의 활성화와 공익성 강화를 위해 영업장소 지정 범위와 영업허가과정에서 우대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 구역, 공영주

차장 및 일반광장 등으로 확대함(안 제2조 제1항).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할 때 우선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자립지원 기관 등으로 확대함(안 제5조 제1항).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위생관리 표준메뉴얼 보급을 추가하고 국가, 자치구,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2)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 3) 기타사항 :

###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통칭 푸드트럭으로 불리우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수의계약 우선대상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및 공익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음.

#### 2 주요사항 검토

##### □ 영업장소(안 제2조제1항)

- 안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영업가능 장소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로 정하고 있던 것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까지 확대한 것으로,
  - 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서울메트로 등 6개 투자기관<sup>1)</sup>과 서울의료원 등 15개 출자·출연기관<sup>2)</sup>의 행사까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이 가능하게 되며,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차원에서 집행부도 동

1) 투자기관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공사, 농수산물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총 6개)

2) 출자·출연기관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관광마케팅(주)(총 15개)

의한 사안임.

- 안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영업장소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을 신설하였는데,
  - 해당 구역의 경우 최근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 등에 타격이 큰 전통시장의 상인회 등 현 상권과의 갈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2조제1항제5호와 제6호에서는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과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등의 광장과 공영주차장은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에 해당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 우선 영업 자격(안 제5조)

- 안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시설사용 수의계약에 있어 취업애로 청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까지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를 아우르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sup>3)</sup>에서 푸드트럭으로 수익계약을 통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직접 푸드트럭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 단체와 수익계약 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조례 제정 취지는 취업애로자 등 개인의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고,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목적과 달리 이익의 사익화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영업에 대한 지원 등(안 제10조, 안 제11조)

- 안 제10조제1항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성화를 위해 현 조례 상의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외에 “위생관리에 관한 표준 매뉴얼 보급”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푸드트럭 영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위생관리 매뉴얼 보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2016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를 만들어 자치구로 1,500부 가량을 배포한 바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음.
- 또한 안 제10조제4항은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자치구,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푸드트럭 사업 발전을 위해 민관의 소통과 정보공유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임.
- 안 제11조는 조례안 외의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안 제10조제1항의 “위생관리에 관한 표준 매뉴얼 보급”은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에 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V. 토론요지 :

- 법 시행령에서 수의계약 우선대상을 “사람”으로 한정된 것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경우, 푸드트럭 운영 시 소득발생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구조적인 모순이 존재함.
- 저소득 자영업자의 구조적 취약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기업 등이 푸드트럭 자영업자를 대체하여 고용보험 및 실업수당 등 혜택 부여, 자영업 실패에 따른 손실 위험 회피 필요함.
- 조례에서 영업장소를 규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특정 장소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현행 조례 제3조)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통시장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또한 푸드트럭 영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집행부는 역시 전통시장의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에 찬성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646 |
|----------|------|

발의년월일 : 2017년 2월 10일

발 의 자 : 이윤희, 박운기, 서윤기  
유동균, 최판술, 오경환  
강성언, 김영한, 김광수(노원)  
김혜련, 이병해, 이정훈  
우미경, 김제리, 남재경  
조상호, 김창수, 김정태 의원  
(18명)

## 1. 제안이유

-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의 활성화와 공익성 강화를 위해 영업장소 지정 범위와 영업허가과정에서 우대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 구역, 공영주차장 및 일반광장 등으로 확대함(안 제2조 제1항)
-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할 때 우선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자립지원기관 등으로 확대함(안 제5조 제1항)
- 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위생관리 표준메뉴얼 보급을

추가하고 국가, 자치구,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함  
(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부터 제6호를 제8호부터 제9호로 하고 제4호부터 제7호를 아래와 같이 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7.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제3조 제6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의 지역: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5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제10조 제1항 “교육”을 “교육, 위생관리에 관한 표준 매뉴얼 보급”으로 하고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자치구,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5.·6. (생 략)

② (생 략)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신 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7.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8.·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첨부서류) -----  
-----  
-----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의 지역: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  
-----  
-----다음  
각 호의 대상-----  
-----  
-.

② (생 략)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취업으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 교육, 위생관리에 관한 표준 매뉴얼 보급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자치구,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